

개정된 문화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중 개정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문화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중 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태우

1991년 12월 17일

국무총리 정원식

국무위원
④ 총무처장관 이인택

◎ 대통령령 제 13, 520호

◇ 改正理由

急增하는 文化行政需要에 副應하여 圖書館을 地域文化 center 機關으로 육성하기 위한 政策機能을 強化하고, 國立中央圖書館이 다른 圖書館에 대한 指導·지원을 하는 등 國家代表圖書館으로서의 機能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民間傳來의 民俗樂을 國家的 次元에 걸쳐 계승·발전 및 普及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機構와 人力을 補強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 가. 國文出版局에 圖書館政策課를 新設함(令 第15條).
- 나. 國立中央圖書館에 支援協力部(2級)와 閱覽管理部(2級)을 新設하고, 現行의 5課에서 7課로 擴大改編하며, 分館長의 職級을 5級에서 4級으로 上向調整함(令 第32條의 2 내지 第32條의 9).
- 다. 國立國樂院長 所屬下에 民俗國樂院(4級)을 新設함(令 第48條의 2).
- 라. 定員 44人(2級 2, 4級 5, 5級 10, 6級 10, 7級 2, 8級 1, 9級 2, 技能職 12)을 增員함(令 別表 1 · 別表 3의 2 및 別表 6). <별제처 제공>

문화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5조제 1항 중 “도서출판과 · 출판자료과”를 “도서 출판과 · 도서관정책과 · 출판자료과”로 하고, 동조 제 2항 중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를 “어문과장 · 도서출판과장 · 출판자료과장 및 저작권과장은 서기관으로, 도서관정책과장은 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으로 보한다”로 하며, 동조 제 4항제 7호 내지 제 10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 5항 및 제 6항을 각각 제 6항 및 제 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 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도서관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발전 종합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도서관발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진흥기금의 조성 및 관리
 4. 국민독서운동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도서관협력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6. 도서관에 대한 지원 및 지도
 7.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한 지도 및 감독
 8. 기타 도서관진흥업무에 관련된 사항
- 제 5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장 국립중앙도서관

제 32조의 2(직무) 국립중앙도서관(이하 “중앙도서관”이라 한다)은 도서관진흥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 32조의 3(관장) ① 중앙도서관에 관장 1인을 두되, 관장은 관리관 또는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관장은 문화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 감독한다.

제 32조의 4(하부조직) 중앙도서관에 지원협력부 및 열람관리부를 둔다.

제 32조의 5(공무원의 정원) 중앙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 2와 같다.

제 32조의 6(지원협력부) ① 지원협력부에 서무과 ·

지도협력과 및 문화연수과를 두고, 부장 밑에 전산담당관 1인을 둔다.

② 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서무과장 및 지도협력과장은 서기관으로, 문화연수과장은 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으로, 전산담당관은 사서서기관 또는 4급 상당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수
 2.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기타 인사사무에 관한 사항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과 심사·분석
 5. 예산·회계 및 결산
 6.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7. 감사 및 사정업무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기타 관내 다른 부과 부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지도협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도서관간의 협력에 관한 업무
 2. 도서관협력망의 기능수행에 관한 기획·조정 및 지도
 3. 도서관자료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간행물의 교환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6. 시범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문화연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의 지역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사서직공무원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각종 강연회·좌담회 등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5. 도서관발전을 위한 연구
- ⑥ 전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장을 보좌한다.
1. 도서관업무 전산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도서관업무 전산화를 위한 표준화작업 및 기술 보급
 3. 전자계산기의 관리 및 운용
 4. 기타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

제32조의 7(열람관리부) ① 열람관리부에 열람봉사과·남본파·자료조직과 및 서지표준과를 둔다.

② 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열람봉사과장·자료조직과장 및 서지표준과장은 사서서기관으로, 남본파장은 서기관 또는 서서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열람봉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자료의 열람 및 대출
 2. 일반 참고업무에 관한 사항
 3. 열람실·자료실 및 간행물실의 운영
 4. 열람봉사제도의 개발 및 보급
 5. 순회이동문고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남본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본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남본대상자료의 조사 및 분석
 3. 고서의 수집·등록·보존 및 해제
 4. 도서관자료의 현황조사 및 연구
- ⑥ 서지표준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자료에 관한 국가표준화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서지의 발간 및 보급
 3. 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의 운영
 4. 서지표준화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제32조의 8(분관) ① 중앙도서관의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분관을 둔다.

② 분관장은 사서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분관장은 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분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분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자료의 선정·수집·보존 및 관리
2. 도서관자료의 열람 및 대출
3. 일반 참고업무에 관한 사항

제32조의 9(운영세칙) 중앙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제4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 2(민속국악원) ① 민속악의 보존·전승 및 보급을 위하여 국악원장 소속하여 민속국악원을 둔다.

- ② 민속국악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민속국악원에 서무과와 장악과를 두되, 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장악과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서무과는 제46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장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연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연물의 제작 및 공연관리
3. 민속악연주단의 관리
4. 악기·의상 및 소품의 관리
5. 조명 및 음향의 관리
6. 대·소도구 및 무대장치의 관리
7. 무대기기의 조작 및 관리
8. 민속악의 강습 및 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9. 민속악의 국내외 교류 및 홍보
10. 민속악의 국내외 교류 및 홍보

⑥ 민속국악원에 전속의 민속악연주단을 둘 수 있으며, 민속악연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악원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정한다.

[별표 1]중 총계 “314”를 “320”으로, 일반직 계 “201”을 “205”로, 서기관란 다음에 “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 1”을, 행정사무관란 다음에 “사서사무관 1”을 각각 신설하고 “전산처리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을 “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으로, 행정주사 “60”을 “61”로, “전산처리사”를 “전산주사”로, “사서”를 “사서주사”로, 행정주사보 “34”를 “35”로, “전산처리사보”를 “전산주사보”로, “사서보”를 “사서주사보”로, 기능직 계 “81”을 “83”으로, 10등급 사무보조원 “53”을 “55”로 한다.

[별표 3의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중 총계 “71”을 “85”로, 별정직 계 “13”을 “15”로, 무대기계·미술담당(6급상당) “1”을 “2”로, 조명·음향담당(7급상당) “1”을 “2”로, 일반직 계 “27”을 “32”로, 행정사무관 “2”를 “3”으로, 행정주

사 “2”를 “3”으로, 행정서기 “1”을 “2”로,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4급상당) “1”을 “2”로,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2”을 “3”으로, 기능직 계 “31”을 “38”로, 10등급 기계원 “2”를 “3”으로, 10등급 운전원 “2”를 “3”으로, 10등급 사무보조원 “19”를 “22”로, 10등급 방호원 “1”을 “3”으로 한다.

[별표 2]중 “사서보”를 “사서주사보”로 하고, [별표 3]중 “전산처리사”를 “전산주사”로, “사서”를 “사서주사”로 하며, [별표 5]중 “전산처리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을 “전산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으로, “사서보”를 “사서주사보”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의 2]

국립중앙도서관공무원정원표(제32조의5관련)

총 계	263
별정직 계	4
고서전문원(5급상당)	1
고서전문원(6급상당)	1
고서전문원(7급상당)	1
일반직 계	178
관리관 또는 별정직(1급상당)	1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2
서기관	2
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	2
사서서기관	4
사서서기관 또는 별정직(4급상당)	1
행정사무관	6
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사서사무관	12
건축기좌	1
행정주사	16
전산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2
사서주사	25

기계주사	1	기능직 계	81
전기기사	2	10등급 전기원	3
행정주사보	7	10등급 기계원	2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2	10등급 난방원	5
사서주사보	41	10등급 운전원	5
기계기사보	1	10등급 위생원	10
전산서기 또는 별정직(8급상당)	2	10등급 사무보조원	45
사서서기	35	10등급 방호원	11
사서서기보	12		

原 稿 募 集

〈도서관문화〉誌는 700여 단체회원과 1,300여 개인회원의 대변자로서 보다 알차고 유익하게 꾸미고자 회원 여러분의 옥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내용 : 가) 도서관학 및 정보기술의 학술이론과 실무에 관한 논문
 나) 도서관계의 국내외소식, 회원人事소식
 다) 도서관과 관계되는 수필 또는 수기
 라) 기타

2. 보내실곳 : 137-70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2동 산60-1

전화 : 535-4868 · 5616

3. 기타 : 가) 원고를 보내실 때 약력과 사진 1매(“도서관문화”자료실 영구비치용)를 첨부바랍니다.

나)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稿料를 드립니다.

圖書館文化 편집실